

구 분	공 사 개 요	노 선 연 장	공사기간	비 고
을 립 께 도로확장	도곡 IC~반포대교간 확장	B=44.0m, L=352.3km	'89~'94	구 간 별 부분 개통
신 도 시 연결도로	장지~강변북로간 도로 포이~내곡간 도로	B=27.0m, L= 9.3km B=19.0m, L= 1.9km	'92~'94	"
방사연결 도로	성산대교~행주대교간 강변북로 연결 동부간선 연결 북부간선 연결	B=40.0m, L= 8.0km B=34.8m, L= 5.4km B=27.0m, L= 6.7km B=25.0m, L= 3.3km	'88~'94	"

[사업소별 보유장비 현황]

사업소	계	행정 차량	덤프 트럭	평삭기	로우더	로울러	휘니샤	노면 보수차	그레 이다	추레라	제설차	타이탄
계	155	14	41	8	9	27	4	10	4	3	16	19
동부	37	3	9	2	2	7	1	2	1	1	4	5
서부	37	3	9	2	2	6	1	3	1		5	5
남부	40	4	11	1	2	8	1	2	1	1	5	4
북부	41	4	12	3	3	6	1	3	1	1	2	5

○ 專門委員 安錫洙 다음 서울特別市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等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서울特別市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等中改正條例案은 1992年 12月 26日 大統領令 第13786號로 改正 公布된 地方公務員任用令中改正令에 따라 技術職公務員의 職級 名稱을 行政職公務員의 職級 名稱體系와 같이하기 위하여 該當條例의 條文을 整備하는 것으로 별도의 問題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서울特別市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은 1992年 12月 26日 大統領令 第13790號로 改正 公布된 建設技術管理法施行令에 따라 建設審議委員 數를 100人 이내에서 120人 이내로 增員하고, 建設技術研究機關, 其他 關係機關에 技術檢討를 의뢰할 수 있고, 이에

다른 費用을 支給할 수 있는 規定을 新設하는 內容을 主要骨子로 하고 있습니다. 同條例 改正은 上位法的 改正에 따라 條例의 條文을 整備하는 것으로써 별도의 問題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別添의 建設技術管理法施行令 該當條文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가. 建設기술관리법시행령

○ 제15조(의견청취등)①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 연구기관의 기타 관계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수당 및 여비등)①중앙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 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안에서 기술검토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0인(서울특별시의 경우는 1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부위원장은 시·도의 건설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위원은 시·도의 5급이상 공무원 및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12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1조, 제12조,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지방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專門委員 安錫洙 다음은 서울特別市自動車管理事業所設置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한 檢討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自動車管理事業所設置條例廢止條例案은 自動車登録事務 改善方案에 따라 92年 1月 1日부터 段階的으로 自動車管理事業所 業務를 區廳長에게 移管함에 관련된 各 條例의 條文 整備 및 서울特別市行政權限委任條例를 改正하는 內容을 主要骨子로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問題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서울特別市公園綠地管理事業所設置條例

案에 대한 檢討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公園綠地管理事業所設置條例案은 公園의 綜合開發計劃의 推進과 公園施設을 合理的으로 運營코자 現 綠地事業所, 綜合建設本部 造景部 및 南山公園管理事務所 外 4個 公園管理事務所를 統廢合하여 公園綠地管理事業所를 新設하는 內容으로써 都市公園의 效率的 管理, 公園·綠地 造成의 綜合的 計劃樹立 및 施行, 各種 묘목, 꽃묘, 잔디의 綜合的 需要 測定과 生産供給 등을 考慮하여 볼 때 類似業務를 擔當하는 機關을 統廢合하여 運營하는 것은 상당한 理由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新設된 自動車管理事業所의 例에서 보듯이 管轄業務가 區廳에 移管됨에 따라 이번에 同事業所가 廢止되는 것을 볼 때에 機構 新設 및 調整은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別添의 機構 및 定員 現況 등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參 照)

(다음 페이지에 계속)